

과 업 지 시 서

과업명 : 2022년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2022. 12.

연 세 대 학 교
시설처 안전관리팀

1. 과업명 : 2022년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2. 목적

본 과업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건강검진의 실시
에 의거 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중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
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개요

가. 건강검진대상자 :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연구원 등) 총 1,160명

나. 건강검진 내용 : 일반·특수건강검진

다. 계약기간 : 계약 후 90일

라. 주요일정

1) 사전채취항목 배부 기간 : 2022. 12. 21. ~ 12. 23.

2) 내원 검진기간 : 2022. 12. 26. ~ 2023. 1. 25.

3) 결과통보 및 2차검진 수행 : 2023. 1. 26. ~ 2023. 2. 20.

4) 운영시간 : 평일 07:00 ~ 14:30 / 토요일 07:00 ~ 10:00 (일요일 운영없음)

4. 업체조건

가.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입찰참가자격 등
록한 기관이어야 한다.

나.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대학교 특수건강검진을 최근 2년간 2회 이상 검사한 기
관이어야 한다.

다.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원활한 검진을 위하여 수도권 내에 2개소 이상의 검진
센터를 운영 가능하여야 한다.

5. 일반시방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계 1부

2) 용역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1부

3) 특수건강진단기관 증명서류 1부

나. 용역수행자는 관련법 및 사업내용에 의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강검진결과표 및 검진실시 과정에서 획득한 제반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라. 계약해제

사업 체결 후 사업수행 중에 다음 경우가 해당될 때는 우리 대학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 본 과업지시서(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 포함)의 지시사항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를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또는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
- 2) 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완료일 내에 도저히 완료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추진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판단될 경우
- 3) 기타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마. 건강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을 동시에 실시하여야한다.

<1>특수건강검진 항목	
1. 청진, 객담, 구강검사	8. 요 10종, 요특수, 혈압측정, 소변세포병리
2. 천식, 폐활량, PFT	9. COHb, Hct, Met-Hb
3. X-RAY 촬영	10. 순음청력(양측기도), 정밀(이경)
4. EKG, TC, HDL, TG	11. 손톱압박, 압력, 레이노현상
5. Hb, Hct, WBC, RBC, PLT	12. 물질별 대사산물 검사
6. 망상적혈구수	13. 치아부식증 검사
7. 백혈구백분율	14. 문진, 진찰, 야간설문 등

6. 특기시방

가.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착수 후 본교와 협의된 날짜에 내원검진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건강검진대상자의 증가 또는 미 검진으로 대상인원이 변동될 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2차 검진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협의 후 정산한다.

다.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후 결과는 검진대상자 및 본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교 제출용 검진 결과보고서는 전체 검진결과표로 제출)

라. 문진, 진찰 등으로 산업보건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특수건강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마.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5조 별지 제22호 서식 활용)를 작성 제출하며, 추가자료(통계자료) 요구 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시설처 안전관리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7. 기타사항

- 가.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내원검진 시 정확한 건강검진을 위하여 산업의학전문의 2인 상주 및 검진을 실시한다.
- 나. 검진 중 검진자 안전 및 재해방지에 유의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검진기관이 진다.
- 다. 검진기관은 본교에서 지급하는 검진대상자 목록을 확인하고, 검진대상자에게 검진 일정과 문진표 및 준비물을 사전에 전달하여야 한다.
- 라. 검진관련 결과나 개인정보는 검진 목적 외 일체 외부유출을 금지한다.
- 마. 부정입찰이나 상위 입찰자격을 고의로 위조하는 경우에는 입찰 취소와 더불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위반한 검진기관이 수반한다.
- 바. 검진기관은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2차 검진을 개인별 공지하고, 제반 사항을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 2차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 검진기관은 2차 검진대상자 목록 및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 12.

시설처 안전관리팀